##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도로교통법위반

[부산지방법원 2010. 5. 11. 2010고단947-1(분리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전세정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정인권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300,000원을 추징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